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편집실

노동부는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법적용대상사업장을 일부업

종을 제외한 전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담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을 업종별로 대폭 완화하였다.

산업보건에 관한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	행	개	정
<p>제 3 조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법제 3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 4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범중 보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 수렵업, 어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보험업 및 부동산업 2. 용역업. 다만, 기계 및 장비임대업을 제외한다. 3. 서어비스업. 다만, 위생 및 유사서어비스업, 영화의 제작 배급 및 상영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 수선업, 세탁 및 염색업을 제외한다. 4.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5.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6. 제 1 호 내지 제 5 호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p>제 3 조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①법제 3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농업, 수렵업 및 어업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한다.</p> <p>②제 1 항에 규정된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동표의 구분에 따라 범중 일부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 13 조 (보건관리자의 선임)</p> <p>①법제 1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과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13 조 (보건관리자의 선임)</p> <p>①법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에 규정된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p>		

현행	개정
<p>②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당해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업무의 다른 업무를 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상시 1천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50인당 월 1시간이상 그 사업장에서 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②사업주는 제 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업무의 업무를 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별표 8에 규정된 사업장외의 사업장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별표 8에 규정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의 근로자 50인당 월 1시간 이상을 당해 사업장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행하게 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⑤ 1인의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장수 및 근로자의 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 14 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p>	<p>제 14 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현행과 같음.</p>
<p>제 15 조 (보건관리자의 직무등) ① 보건관리자는 법제 12 조제 3 항 각호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2. 건강진단의 실시 3.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교육 4. 작업환경의 측정 및 평가 5. 작업장내의 산업위생시설의 점검, 개선 및 설계에 관한 지도 	<p>제 15 조 (보건관리자의 직무등)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의 건강상담 3. 4, 5,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p>6. 작업방법의 위생공학적 개선</p> <p>7. 보전에 관한 보조자의 감독</p> <p>8. 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p> <p>9. 기타 근로자의 보전에 관한 사항</p> <p>②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p> <p>(신 설)</p>	<p>7. 보건·위생에 관련되는 보호구 구입시의 성능 확인</p> <p>8. 현행 7 과 같음.</p> <p>9.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기타 근로자보호에 관한 지도</p> <p>10. 현행 8 과 같음.</p> <p>11. 현행 9 와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 25 조의 2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업무) 법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17 조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담당자에 대한 교육 2. 법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또는 법제 31 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지도와 그 기록의 점검 3. 법제 3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의 검토 4. 법제 3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검토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 구분표 (제 3 조제 2 항 관련)

대 상 사 업	적 용 규 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서비스업 (노무 및 경비인력 공급업 과 기계 및 장비임대업을 제외한다) 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화의 제작·배급 및 상영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 골프장운영업, 경마장운영업, 유원지 운영업, 수선업, 세탁 및 염색업, 사진처리업, 의료·보건 및 수의서비스업을 제외한다) 	<p>산업안전보건법 제 25 조, 제 26 조, 제 28 조 및 제 29 조</p>

대 상 사 업	적 용 규 정
<p>3.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p> <p>4.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의료및 수의서비스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가. 사용압력이 매제콤포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이상인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가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이상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콤포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인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등이 제한되는 기계·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사용하는 사업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및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을 저장·판매 또는 사용하는 사업</p> <p>5. 금융업 및 보험업</p> <p>6. 제 1호 내지 제 5호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p>	<p>산업안전보건법 제 25조, 제 26조, 제 28조 및 제 29조와 동법중 보전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내지 제 16조 및 제 24조를 제외한 모든 규정</p> <p>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내지 제 16조 및 제 24조를 제외한 모든 규정</p> <p>산업안전보건법 제 25조, 제 26조, 제 28조 및 제 29조</p>

[별표 8]

전담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 (제 13 조제 1 항 관련)

사 업	사업장의규모 (상시사용근로자수)
1. 광 업	1천인이상
2. 화합물·석유·석탄·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천인이상
4. 제 1 차금속산업	
5.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6. 기타사업	

[별표 9]

1인의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수 (제 13 조제 5 항 관련)

보 건 관 리 자	대상사업장 및 근로자수
전담보건관리자	근로자수의 제한 없음
전담보건관리자의외 의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1인당 사업장 10개소이내 또는 총근로자수 1천인 이내
보건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 1인당 사업장 150개소이내 또는 총근로자수 1만5천인 이내